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1188-01



#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



언론이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22년 제작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보완하여,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의 폭력 유형이  
추가된 수첩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에 포함된 보도 사례는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인용된 것으로,  
특정 언론사나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뜻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 CONTENTS

<b>I</b>	<b>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취재·보도 시 유의해 주세요.</b>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08
	2. 취재 시 유의사항	11
	3. 기사 작성 및 편집 제작, 보도 시 유의사항	14
<b>II</b>	<b>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알아야 할 표현과 개념</b>	
	1. 잘못된 인식 및 고정관념 바로잡기	38
	2. 잘못된 표현 및 용어 바로잡기	42
	3. 개념 이해	44
<b>III</b>	<b>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보도 체크리스트</b>	
<b>IV</b>	<b>부록</b>	
	1.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68
	2.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75
	3.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78
	4.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관련사항 발췌)	81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관련사항 발췌)	86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취재·보도 시 유의해 주세요.



- 0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 02 취재 시 유의사항
- 03 기사 작성 및 편집 제작, 보도 시 유의사항

# 01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 01 올바른 인식 갖기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을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바라보고 보도한다. 성희롱, 성폭력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언동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을 침해하는 것임을 명심한다.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정신적 병리 현상, 절제할 수 없는 성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성 인식과 성차별적 문화 등 사회문화적 구조의 영향에도 있다는 것을 유념한다.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은 낮은 사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보다 아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으며, 특히 성희롱·성폭력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권력관계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한다.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의 잘못된 처신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범죄에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인식될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한다.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02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 ▶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미치는 극심한 혼란과 인권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 ▶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 ▶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에 적합한 보도 방식을 고민한다.



- ▶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보도 내용 중 근무지, 경력, 가해자와의 관계, 주거 지역 등 주변 정보들의 조합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 ▶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함에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로 보도한다.
-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한다.
- ▶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실명으로 '○○○ 사건'이라고 부르는 등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워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03 선정적·자극적 보도는 지양해 주세요.

- ▶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출신학교, 주변의 평가, 가족관계 등 사적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사건 또는 사건의 핵심이 아닌 주변적인 사항들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지 않도록 한다.
- ▶ 사건의 가해 방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는다.
- ▶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 04 잘못된 보도는 또 다른 인권침해! 신중하게 판단하여 보도해 주세요.

- ▶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인식하거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한다.

- ▶ 사건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사실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용하여 전달하는 보도를 지양한다.
- ▶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적절한지 판단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 ▶ 정확한 표현 및 용어를 사용하여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그 심각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보도한다.

## 05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 해결 중심으로 보도해 주세요.

- ▶ 피해자 보호 제도나 관련 법률 정보,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 ▶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 사건을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하는 조직문화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에도 주목하여 보도한다.
- ▶ 사건의 발생 초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피해의 회복이나 치유 과정, 제도의 개선 노력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한다.
- ▶ 기사 말미에 1366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한 안내를 담는다.

## 02 취재 시 유의사항

### 01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한다.

- ▶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생활까지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피해자나 가족, 주변인을 동의 없이 촬영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내·외부를 촬영하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사적 공간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 ▶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기록물(SNS, 일기, 유서, 편지, 사진, 생활기록부 등)을 직접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 사건 보도에 불필요한 피해자의 신상정보 또는 사적정보(가족관계, 직업, 소득, 거주지 등)를 취득하려 하지 않는다.
- ▶ 취재를 위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보도사례

#### △△△사건 보도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법원 판결

▶ 피해자 아버지의 월수입, 피해자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독서록·노트·그림·그림 일기장, 피해자의 집 내·외부 촬영 사진·영상 등을 보도한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 인정. 피해자의 집 내부에 들어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인정.

※ 피해자의 집 내부구조를 ‘그림’으로 재구성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아 불법적이지 않다고 판단

##### <법원의 판단 내용 중 일부>

언론사가 공개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

자체는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죄에 있어 사적 인물일 뿐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공개된 사항들이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심이 피해자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 02 피해자 및 가족 등 관련자를 인터뷰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지킨다.

- ▶ 낯선 사람의 접근만으로도 일상적 심리의 평온이 깨지고, 불안함을 느끼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먼저 이해한다.
- ▶ 사건 당사자나 가족은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취재를 요청하지 말아야 하며, 사건 당사자 등이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을 보도에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 ▶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에 피해 내용을 제보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언론 보도를 거부하는 경우,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 ▶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먼저 밝히고,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인터뷰를 실시하되,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경우 보도 이후 예상되는 2차 피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 ▶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질문, 사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 출신 학교, 재직 회사, 범죄 전력, 경제적 능력 등
- ▶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호기심 어린 질문 또는 가부장적 통념에 근거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 ▶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입증책임을 지우는 질문을 삼간다.
- ▶ 피해자나 주변 사람이 인터뷰 상황임을 알지 못한 채 말하거나 답변하는 내용을 동의 없이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 ▶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는 피해자의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에 부적절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뉴스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 사례

「출연」 ‘△△계 미투 폭로’ ○○○ “고1 때부터 성폭행 당했다”

앵커는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이라든지 폭로 전 동료나 지도자에게 알리거나 이럴 기회는 없었는지요?”, “5년간 20여 차례 성폭력 당하는 동안 ○○○ 선수가 참아야 했던 건 협박 때문인가요?”, “A 코치의 해명을 취재진이 받아보니 ‘성폭행은 없었으며 연인관계였다’고 해명하는데, 상당히 ○선수께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거든요?”,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만 17살 ○○씨에게 가장 필요했던 도움은 무엇인가요?” 등의 질문을 함.

▶ 인터뷰를 진행 전 사전질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문항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왜 진작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는지’, ‘가해자의 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부적절한 질문을 함.

###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도한 사례

피해자가 언론사에 성추행에 관한 내용을 제보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개인적이고 민감한 사건임을 고려해 취재기자에게 방송 보류를 요청했음에도 언론사가 방송했고, 이후 취재기자와 재보도 중단에 합의했음에도 후속으로 보도해 피해자의 초상 등이 동의 없이 공개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보도 및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된 영상 삭제와 함께 상징적인 의미에서 5만 원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함.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피해자의 보도 거부 의사를 존중해 조정대상보도와 함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관련 영상들도 모두 열람 차단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 기사 작성 및 편집 제작, 보도 시 유의사항

### 01 피해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피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학교, 직업, 용모 등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이다.  
\*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 제50조제2항제2호 참고
- ▶ 문제는 간접적인 노출이다. 신원 노출을 막아주는 안전한 모자이크, 음성변조란 없다는 생각으로, 간접적인 노출 가능성도 최대한 차단한다.
- ▶ 피해자의 직·간접적인 정보가 많을수록, 구체적일수록, 범주가 좁을수록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높다.
- ▶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상 정보를 부각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 피해의 제보자, 고소·고발인, 증인 등에 대해서도 신상 정보 및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 ▶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원도 노출될 수 있음을 유념한다.

####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 보도사례

○○○○(프로그램 명), 「데이트 폭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교제폭력에 관한 피해 사연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피신청인이 유감을 표명하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조정 성립.

### 「□□ ‘처제 성폭행, 짐승형부’ 징역 15년 구형」

성폭력 가해자의 소속정당, 지역구, 직책, 나이 등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가해자와 인척(姻戚) 관계인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됨.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함.

### 「‘○○○ ○○’ 수개월간 성폭행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선고」

장애를 가진 50대 남성을 수개월 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보도 하면서, 성폭행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여과 없이 공표.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피해자가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등 대중에게 알려진 바 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된 보도사례

### 「“엄마 아빠가 싸워요” ○○, ○○○ 신고로 40대 가장 입건」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행 사건에 대해 다루면서 이를 목격한 ○○의 신고로 남편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함.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사건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항 공표로 인해 신고자인 아동의 성장 과정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 보도사례

### 「한인교수 부부 참극…남편이 아내 살해하고 자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 당사자의 초상, 성명, 나이, 직업, 근무처, 이력 등을 공개함.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 당사자 및 그 유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 「“약으로 날 죽이려 해” 부인 살해한 60대 영장」

피의자 및 피해자의 자택 상세주소, 전경사진 등을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함.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를 공개하는 것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위반함.

## 피해자의 주소지와 사생활이 노출된 사례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범행 전 PC방을 방문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PC방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220m 떨어져 있으며 큰딸 A(피해자)씨가 5~6년간 다녔던 단골 PC방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함.

▶ 가해자의 행적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피해자의 주소지와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됨.

## 피해사실을 공개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부각시킨 보도사례

### 「“○○○은 누구” 갑론을박…진실은?」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피해사실을 폭로한 ○○○이라는 인물에 대한 포털사이트 정보가 피해자의 폭로 글에서 스스로를 설명한 것과 다르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논란은 있으나 피해자가 특정 대학 출신의 연극 배우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실명,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시정 권고함.



◆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직·간접적 정보들

<p>피해자의 나이, 직업, 신분</p>	<p>» 피해자가 소속된 학교나 직장 등 소속 집단이 좁을수록 노출 위험이 증가한다.</p>
<p>피해자의 거주지 및 근무지</p>	<p>» 거주지 사진 내지 영상이 함께 실릴수록, 마을이 특정될수록, 지역사회가 좁을수록 노출 위험이 증가한다. 근무지 또한 마찬가지이다.</p>
<p>범죄 발생장소</p>	<p>» 범죄발생장소는 보도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높은 정보이긴 하나, 피해자와 연관된 공간이므로 정보가 주어질 경우 피해자의 신원 노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과 종합하여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는지 주의하여야 한다.</p>
<p>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p>	<p>»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예 : 친구, 직장 동료, 제자, 신도, 친족 등)도 보도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높은 정보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신분이 공개되면 가해자의 인적 정보와 그 관계성에 의해 피해자도 덩달아 특정될 위험이 높으므로, 다른 정보들과 종합하여 보도에 주의하여야 한다.</p>
<p>주변인 인터뷰</p>	<p>»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히 아동) 피해자의 부모가 인터뷰하거나 학교,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직장 동료, 주민, 관계자가 인터뷰할 경우 이들의 인터뷰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주의하여야 한다.</p>
<p>간접 정보들의 조합</p>	<p>»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관련 속보 경쟁 상황에서는, 여러 언론사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여러 정보들의 조합으로 피해자가 쉽게 특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피해자 관련 정보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p>

## 02 피해자의 실명 및 얼굴을 공개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방식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보도 방식을 고민한다.

- ▶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보도방식은 2차 피해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의 방식은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분과 얼굴을 공개하기보다 취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 ▶ 언론은 피해자에게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보도 방식을 종용해서는 아니 되며,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실시한다.
- ▶ 생방송으로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전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고 방송에 적합한 표현 및 묘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질문 및 답변 내용을 점검하여 가십성 이슈로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 피해사실이 여과 없이 보도된 사례

#### 「[인터뷰] “△△△ 안마 거부하면 극단 내 ‘마녀사냥’… 구조적 문제도」

생방송 중 유선으로 진행된 인터뷰(실명 비공개, 음성 변조)에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피해사실을 여과 없이 증언하여 앵커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함.

▶ 사전에 질문 및 답변 내용을 점검하여 방송에 적합한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음. 방송사 홈페이지에 해당 영상을 다시 올릴 때는 피해자 발언 중 일부에 ‘삐 소리’를 넣고, 스크립트에서는 상세한 증언 내용을 삭제하였으나 이미 방송을 통해 해당 증언이 여과 없이 나가버려, 수많은 인터넷 언론이 ‘□□□ 앵커도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사실만을 부각한 선정적 기사를 쏟아냄.

### 03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등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는다.

- ▶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 등이라고 해서 사생활 영역(피해자의 습관, 기호, 질병, 장래희망, 성적 이력, 주변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평가 등)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영상, 사진 등을 본인 동의 없이 보도하는 것은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사생활 보도사례

##### 「○○○ “업무능력 관련 허위소문 차단해 달라”」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이후 피해자의 업무능력 및 근태 등과 관련하여 허위소문에 대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취재 결과, ○○○에 대한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한 □□내부(원 기사에서는 피해자의 소속기관 기재)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한 △△ 관계자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업무 처리도 뛰어났다고 밝힌 반면, 다른 관계자는 □□□□(원 기사에서는 실제 근무처 기재) 근무 당시 동료들 사이에서 성품과 복무 평가가 좋지않았다고 전했습니다.”라고 취재 결과를 전함.

▶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업무능력에 대해 보도함. 피해자에 대한 상반된 평판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소문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

#### 사건당사자의 과거 사진·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보도한 사례

##### 「△△△성추행 추가 폭로, 가수 ○○○?... 아찔한 몸매?, 과감한 노출까지?」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과거 사진을 게재하면서 기사 제목 및 본문에 해당 사진 관련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시정 권고함.

## 04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자세하게 보도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보도를 하지 않는다.

- ▶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피해 상태를 자세히 보도할 경우,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높다. 또한 기사를 접하는 피해자에게 사건을 다시 상기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 ▶ 언론은 피해자가 SNS 등을 통해 알린 피해 상황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보도하기에 적절한 묘사 수위를 고려하고 표현을 정제하여 보도한다.
- ▶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 '○○○사건'으로 보도하는 것은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2차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실명으로 피해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워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다.
- ▶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로서 배려 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피해상황을 여과 없이 보도한 사례

「○○○ 대표, 용감한 미투 고백 실천한 인물 ... 그의 작품은?」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의 SNS글 전문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극단의 상황과 공연 작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피해자의 실명,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하였다는 것과 가해행위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이루어져 '성 관련 보도'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 권고함.

###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보도사례

#### 「출동 여경 성희롱 ... 여경 성추행 늘어」

“피해 여경이 업무 중 성추행을 당한 후 수치심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

▶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 여성 경찰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이 늘어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피해자가 수치심에 제대로 근무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드러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함.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 및 조정이 성립하여 해당 뉴스 삭제함.

#### 「[단독] “행겨드리지 못해 슬프다” 故△△△ 전 여비서 A씨 편지 공개」

“○전 시장을 향한 애뜻한 내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피해자가 재직시절 가해자에게 보낸 손편지를 입수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흐림처리 없이 보도하였고, 편지 내용을 두고 ‘애뜻한 내용’, ‘애뜻한 감정’이 확인된다고 표현하며 이런 편지를 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심스럽다는 듯 보도함.

## 05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에 ‘피해자 측(피해자 개인, 가정환경 등)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피해자에게 왜 그 시각에 거기 있었는지, 피할 수는 없었는지, 저항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등 가치 판단이 담긴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는 그 상황을 초래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
- ▶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 여부, 옷차림, 피해자 거주지와 의 접근 가능성 등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 ▶ 피해자가 방어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범죄의 ‘원인 제공’ 내지 ‘피해자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 ▶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도함에 있어 은연중이라도 ‘가치판단’이 가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어떤 상태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식의 표현은 삼가야 한다.

###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여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사례

#### 「단독」 "남자 여럿 만나" n번방 피해여성에 비난댓글 단 공무원

▶ 기사 내용은 그런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나, 기사 제목에 “남자여럿만나”라는 누리꾼의 비난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

#### 「섬마을 주민,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옹호? “여자가 꼬리치면 안 넘어갈 남자 있냐?”

▶ 기사 내용은 일부 주민들이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발언을 하여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는 내용이지만 기사의 제목은 “여자가 꼬리치면 안 넘어갈 남자 있냐?”라는 일부 주민의 인터뷰 발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해 여성이 가해자들을 유혹한 것처럼 인식되게 함.

### 피해자 측에 범죄 발생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주어 명예를 훼손한 보도사례

#### △△△사건 보도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엄마는 게임광이다.’, ‘피해자 어머니가 평소 게임에 빠져 밤늦게 외출하거나 며칠씩 집을 비워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다.’, ‘피해자 아버지는 술을 매우 많이 마시는 사람이다.’, ‘피해자 아버지가 평소 집을 자주 비우는 등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다.’ 등.

#### 법원 판결

▶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며, 사건 보도에 필요하다거나 대중의 알권리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

#### 〈법원의 판단 내용 중 일부〉

위 보도들은 명예훼손적 내용 보도에 해당하며 사건 경위 보도를 위해 불가피한 내용도 아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06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자세히 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그 특성상 가해자의 가해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 묘사하게 되면 피해자를 그러한 자극적인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연상, 인식하도록 만들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 ▶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과정, 양태 및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 ▶ 가해행위를 미화하거나 모호하게 표현(‘뭉쓸 짓’, ‘나쁜 손’, ‘몰카’, ‘성 추문’, 구애행위, 애정 관계 등) 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가해자의 사생활 보도가 지나쳐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거나 본말이 전도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 특히 가해행위와 대조되는 가해자의 사생활을 부각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이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

###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사례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줄까” ... □□ 여고서 또 스톱미투」  
 「“어머님이랑 하고 싶어요” 20개월 딸 강간·살해범 장모에 패륜 문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기사 제목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으로 표현하여 선정적으로 보도함.

「“○○○○ 성관계 해줄 것” ... 새아빠가 딸에게 보낸 소름 끼치는 문자」  
 한 남성이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사 제목을 사용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제목에 해당함.

「○○○(전 ○○시의회 의장) 폴스윙 강편치에 아내 사망...○○시민들 치밀어 오르는 분노」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여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함.

## 범행수법과 과정 등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히 보도한 사례

### 「△△△, 24시간 음란행위하다 여중생 깨어나 저항하니 살해」

“(전략) 이어 드링크제에 넣어진 수면제를 먹은 A양이 잠이 들자, 안방으로 옮겨 눕힌 △△△은 A양의 옷을 벗겼습니다. 이때부터 △△△의 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A양의 몸을 만지고 더듬는 한편 입맞춤을 하며 음란행위를 즐겼습니다. 행위 도중 지치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면 이러한 행위를 다시 시작하고 □월 □일 오전 내내 계속됐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여 선정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함.

### 「[사건의 재구성] 어린 의붓딸 12년간 성 노리개 삼은 그놈 ... 뒤늦은 눈물」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함.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학대행위나 피해 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한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모방범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만지는 거 빼고 다했다” “몸매 X된다 X발”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고등학교의 사과문」

공연을 위해 한 고등학교를 방문한 걸그룹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를 여과 없이 공표함.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함.

### 「“바리깡으로 음모 밀고 식고문까지” ... 000 군부대 가혹행위 전말」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군부대 가혹행위 사건을 보도하면서, 포악하면서도 잔인한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함.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해당 범행 수법 공개로 인한 모방의 우려가 있음.



「“그들은 악마였다”... 이모 부부, 10살 조카 학대 영상 공개되자」

공판기일에 검찰이 공개한 영상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학대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표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폭력이나 학대 정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일반 독자에게 이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용어를 사용한 보도사례**

「검은 손·나쁜 입으로 울고 웃겼나... 연에게 덮친 ‘미투’」

「혼자 있던 정신병원 女환자 ‘몸쓸 짓’ 당해...병원은 CCTV 지워」

▶ ‘몸쓸 짓’이라는 표현은 범죄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음. ‘검은 손’, ‘나쁜 입’ 등의 표현도 마찬가지임.

「후배 여경 알몸 ‘몰카’ 찍은 경찰 ‘징역 3년」

▶ 불법 촬영 범죄를 가볍게 인식하게 하는 ‘몰카’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경’이라며 피해자의 성별 특성을 부각하고, 제목에서는 ‘알몸’이라는 정보까지 함께 부각함. 또한 자료화면을 통해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함.

「“신변보호 중에도 그놈 손길...”

강력범죄나 스토킹, 가정폭력 등을 당한 범죄 피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와중에 또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재차 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보도함.

▶ 기사 제목에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함.

**07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를 한다.**

- ①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하거나 일방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는다.
- ②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공방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이 피해자

에게 피해 사실 증명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취재 및 보도를 진행해야 한다.

- ④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다룰 때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 ⑤ 사진 등 자료를 기사에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2차 피해 및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⑥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보도할 때는 법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서술한다.
- ⑦ 이미 타사에서 보도한 사건을 받아 보도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보도한다.

### 가해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보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

「○대 성추행 사건 C 가해자인가! 인터넷 여론 마녀사냥의 희생양인가!」  
「○대 성추행 여학생 변호사 인터뷰 사실 왜곡 되었는가?」

#### 법원 판결

▶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포함한 가해자 측의 주장만을 토대로 하여 가해자들의 세부적인 진술과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실는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보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 이후 ○대 성추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됨.

#### <법원의 판단 내용 중 일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볼 때 가해자의 입장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인용된 관련 진술이나 자료의 사적 성격과 그 구체성의 정도를 감안 하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형사재판에서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론요지서이나 담을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언론보도에 그대로 실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가해자 및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보도사례

「△△△ “내가 이렇게까지...” 친구에 토로,

“하루 한두 끼 식사 때만 부인과 함께”, “두 아들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해”라는 내용의 소제목을 뽑고 △△△가 머무르는 곳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밤에 술을 마셔야 잠들만큼 괴로워했다고 한다”, “매 끼니 밥을 반 공기도 먹지 않는다”는 등 걱정하는 내용과 가족에 대한 언급 및 주변 지인이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보도함.

▶ 성폭력 폭로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내밀한 근황을 다루면서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도함으로써 동정심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고통에 주목하게 함.

### 아직 판결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단정적으로 보도한 사례

「△△△ 허위고소하고 방송 인터뷰한 또 다른 여성 기소」

유명 연예인에 대한 성폭력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난 후, 해당 연예인이 성폭력을 주장했던 여성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언론사는 검찰의 발표만을 근거로 해당 여성의 고소를 허위 고소라고 단정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언론사가 해당 연예인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이후 법원은 해당 여성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 판결 선고를 하였고, 위 판결은 최종 확정됨).

### 법률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 보도사례

「□□중-대전시 교육청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

국가기관인 검찰, 경찰이 해당 학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등의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으나, 실제로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함.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일정 시간 경과 후 조정 대상 기사 및 반론 보도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조정 성립함.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사례

「역무원 살해범, 피해자에 먼저 성범죄 저질러...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는 피해자와 함께 ○○공사에서 재직하였는데, 이미 피해자의 고소로 진행 중이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위를 보도하면서, 해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공표함.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협박의 수단인 촬영물 등의 구체적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 또는 공표된 바 없고, 이를 성관계 영상 등으로 단정할 경우 자칫 가해자와 피해자 간 근거 없는 관계를 연상케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독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음.

### 언론사가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례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캠프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여성 직원이 성추행과 성희롱, 성폭행을 당했음을 암시하는 말을 캠프 내에서 수시로 들었다'는 캠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피해 대상으로 지목된 신청인의 얼굴이 공개된 동영상과 사진을 게재하고, 선거 캠프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배포한 후보자 참석 행사 사진에 대해 신청인이 후보자와 데이트하는 것 같은 사진이라고 설명하며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보도함.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

▶ 언론사는 조정 대상 보도를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며,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 08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부적절한 사진, 삽화, 영상 등을 사용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 ▶ 피해자를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표현하거나 가해자를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등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할 수 있는 삽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 ▶ 사건을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

하게 할 수 있는 삽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 ▶ 영상 보도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 범행 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범행 내용을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아야 하며,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극적인 자료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 ▶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이미지는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한 경우에도 범죄의 잔인함 또는 공포감을 주는 자극적인 자료가 될 수 있고,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주의한다.
- ▶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범행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연하거나 실제 영상을 보도하지 않는다.
- ▶ 영상 보도에 사용되는 자료화면 구성의 경우 취재 기자 1인이 아니라 촬영 기자나 편집자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되므로, 선정적 영상 보도를 막기 위한 공동의 주의 및 협의가 필요하다.

### 부적절한 삽화를 사용한 보도사례

피해자를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표현

「00대 두 딸 00번 성폭행에 낙태까지... ‘악마 아빠’ 징역 30년?」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실제 느끼는 감정과 피해 이후 보이는 반응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석에 웅크린 자세로 울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삽화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나약할 것이라는 피해자 다움의 편견을 강화함.

가해자를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로 표현

「지적장애 머느리 추행 모자라 성폭행까지 ... 00대 시아버지 '징역 3년」



▶ 가해자를 빨간 손, 늑대, 악마 등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로 표현한 삽화를 사용하는 것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특수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함.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

「13세 소녀를 간음한 73세 할아버지 ... 왜?」

**방송통신위원회 경고조치**

▶ 가해자와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누워있는 선정적이고 부적절한 삽화 사용하여 경고조치 받음.

「학교를 맡겼더니...」

**방송통신위원회 권고**

▶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는 듯한 모습을 묘사한 삽화 등을 자료화면으로 노출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권고 받음.

## 부적절한 영상을 사용한 보도사례

범행 영상을 그대로 사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리 난 성추행 사건 영상 CCTV포착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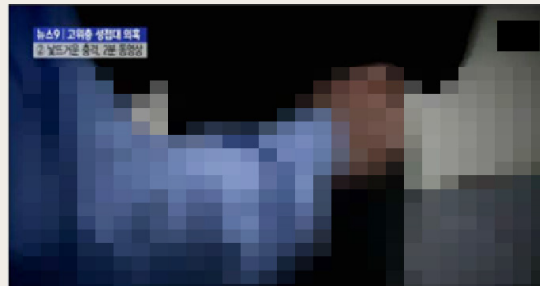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노래방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담은 CCTV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 과정이 영상을 통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되어 시정 권고함.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재연

「'별장 성접대' 낯 뜨거운 동영상 2분, 뭐가 담겼기에...」



### 방송통신위원회 경고조치

▶ 고위층이 성접대 받는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을 방송하면서 한 중년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여성에게 바짝 붙어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자기 속옷을 내리는 장면을 내보내어 경고조치 받음.

### 「“은폐·무마”에 치솟는 분노」



▶ 5초가량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깨와 맨다리를 만지는 재연 장면을 자료 화면으로 방송하면서 선정적, 자극적 장면을 부각함.

### 선정적 자료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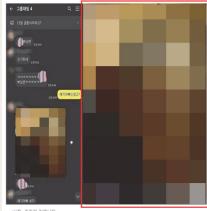
### 「대구 섬유공장 등 외국인 노동자 20% 성추행 경험」



▶ “1년 전 우즈베키스탄 무용수 10명이 공연 비자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입국하자마자 부산의 윤락가로 팔려나갔습니다. 윤락을 거부하다 얻어맞은 상처가 뚜렷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무대에서 춤추는 여성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옷을 거의 입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줌.



「“두 돌 아이 성희롱한 남편 친구, 성관계 암시 손모양까지 보냈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두 돌이 지난 여아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 모양 사진을 공표하고, 해당 손 모양이 성행위를 암시한다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손 모양을 부각한 사진을 여과 없이 게시한 것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것에 해당함.

**09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및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이 재확산되게 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을 가해자-피해자 간의 연애 및 성적인 관계, 또는 대립적인 구도로 보는 경향을 경계한다.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사회 통념을 확인하는 누리꾼의 반응이나 가해자 중심의 개인 의견, 사건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태나 피해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 사실을 폭로한다는 의혹 제기 등을 여과 없이 단순 보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
- ▶ 불특정한 소수 의견이 마치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며, 확인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반응이나 의견, SNS 댓글 등을 여과 없이 인용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을 유념한다.
- ▶ 피해 사실 폭로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재능 및 업적 등 사건과 무관한 긍정적 부분을 부각하는 보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를 희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 누리꾼 반응을 여과 없이 단순 보도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

#### 「[단독] “한번 만진 게 큰 죄냐” △△△ 피해자 조롱 ‘클리앙’ 압수수색」

“경찰에 고소된 글은 ‘□□□ 때도 그렇고 여비서 X탕이를 한번 만진 게 그렇게 큰 죄냐. X나 웃기네’, ‘만약에 기분 나빴으면 진작 퇴사하지. 기분 좋으니까 퇴사를 안했지 X신인가. 아니 그러니까 비서도 즐겼겠지’, ‘2차 가해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2차 가해가 두려운 사람이면 이목을 끌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지. 고인 발인하는 날 서둘러서 기자회견하냐’ 등이다.”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피해 여성을 조롱하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그대로 공표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함. 이는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 상태를 자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함.

###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보도한 사례

#### 「△△△ 성 추문 이어지자 누리꾼 일각 젠더 이슈화 “술집아가 미투하는 시대”」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 유흥업소 직원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함.

###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의 긍정적 부분을 부각하여 보도한 사례

#### 「△△ 시인 미투 논란, △△시민들(원 기사에서는 실제 지역명 기재) 당혹」

#### 「△△ 밍다고 작품까지 ... 성추문에 멍드는 ‘민족영혼」

▶ △△ 시인의 업적을 부각하며 ‘미투로 그의 업적이 손상될 것을 걱정’하는 내용의 기사로, 범죄 행위에 대한 평가와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를 별개로 하자는 주장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내내 거장으로 평가받던 인물을 대상으로 쉽지 않은 폭로가 제기된 시점에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를 희석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 사례

스토킹 범죄를 보도하면서 <이날 현장에서는 주민들 사이에서 A씨와 B씨의 관계가 연인이었으며, 헤어진 상태였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다. 주민 C씨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살해한 게 확실한 거 같다”며 “주민들 모두 A씨를 B씨의 헤어진 남자친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며, 주민들의 말을 인용함.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희석함(확인 결과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아니었음).

스토킹 범죄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6살 딸을 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보도함.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개인적인 신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함.

## 10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을 근절하기 위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조직문화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대책,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35

- ① 언론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을 보도할 때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 감정만을 조성해 처벌 일변도의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하는 조직문화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하여 보도한다.
- ② 언론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정보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알리고, 인식 제고를 위한 사항도 적극 보도한다.
- ③ 사건 초기뿐 아니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피해 이후, 피해의 회복이나 치유 과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④ 피해자 보호, 피해구제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기사 하단에 피해신고 및 상담 번호를 안내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첨부하는 것을 권고한다.

## 〈예시〉

### 성폭력 범죄 기사 하단 정보

※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폭력 범죄 기사 하단 정보

※ 온라인 채팅이나 게임 중 성적인 행위를 권유 또는 강요받거나 불법촬영 및 유포 협박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https://d4u.stop.go.kr>), 여성긴급전화(☎1366, 지역번호 + 1366)에 연락하면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범죄 기사 하단 정보

※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지역번호 + 1366), 카카오톡(women1366)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알아야 할 표현과 개념



- 01 잘못된 인식 및 고정관념 바로잡기
- 02 잘못된 표현 및 용어 바로잡기
- 03 개념 이해

# 01 /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 바로잡기

## 잘못된 인식

❑ 피해자도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혼자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한 경우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거나 술자리에서 합석했을 경우 '피해자도 범죄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 또는 '피해자가 좀 더 조심했어야지'라는 인식은 지양한다.

❑ 피해자는 우울하고 괴로울 것이며, 피해자가 즐거워하는 모습은 웬지 부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피해자의 원래 성격, 지위, 가해자와의 관계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제각각이고 동일인이라도 하루하루가 다를 수 있다. 언론이나 제3자들이 '피해자는 어떨까'를 걱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및 상처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평소 성격을 보면 당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평소 성격, 언행, 사생활 등을 사건과 결부 지으며 '피해자의 평소 성격을 보면 피해자가 당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피해자의 평소 언행을 보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피해 주장을 의심하는 것은 '완전무결한 피해자'가 아니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해자다움'의 고정관념에 해당한다.

❑ 왜 이제야 피해를 폭로하는가? 늦게 폭로를 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등의 피해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 두려움 등으로 피해 발생 즉시 형사고발을 하는 등 처음부터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성희롱·성폭력 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사실을 알려 봤자 이로울 것이 없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 사실을 밝혀도 가해자가 발뺌 하거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모습을 보아왔다면 더욱 피해 사실 공개를 주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것에 대해 다른 이유 및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은 피해자가 걱정하던 2차 피해의 모습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잘못된 인식



**정말 사실이라면  
피해 사실 폭로를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면서 직업을 잃거나 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며, 공개 이후에 실제로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실명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서,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므로, 실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실성과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은 실명으로 나서지 못하는 많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 공개 의지를 꺾는 것이다. 또한, 피해 사실에 대한 폭로의 방식은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피해자가 고소나  
합의금을 언급한다면  
피해의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피해자는 침해받은 법익의 구제를 위하여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 등 형사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하겠다'는 고지, 배상금·합의금 요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적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텔에 따라가거나  
스킨십을 허락한 후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모텔 등에 별 저항 없이 같이 들어갔더라도,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행위는 준강간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이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하에 스킨십(키스 등)을 했더라도,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성행위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 잘못된 인식

❑ 왜 가만히 있었냐?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성폭력 가해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심리적, 물리적, 상황적, 관계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목숨이나 안전보다 성폭력을 막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과 같다. 또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왜 수차레나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냐?’고 피해자에게 묻는 것은 성폭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일뿐더러 가해자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 바로잡기

❑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의  
가해자는 주로 사이코패스  
이거나 변태 성향 내지  
성충동 조절 장애가 있을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등은 연인, 직장 상사 및 동료, 친족, 지인 등 아는 사람에게 의하여 더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다양한 범죄 양상이 혼재하며, 사이코패스 또는 변태 성향 내지 성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의한 범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오히려 ‘잘못된 성인식’을 가진 평범한 범죄자가 더 많다.

❑ 미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펜스 롤이 답이다?

‘성희롱·성폭력 가능성을 미리 차단 한다’는 명분으로 회식이나 출장에서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남녀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들에게 사회적 고립을 겪게 만드는 차별행위이다. 그동안 무심코 해왔던 언행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러한 언행을 하지 않고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

❑ 스토킹은 상대방에게  
구애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과 긴밀한 관련이 있고 대부분 아는 사이(전 연인, 전 배우자 등)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다른 폭력과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토킹이 단순한 호기심, 구애의 한 과정에서 비롯되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역시 스토킹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다.



### 잘못된 인식



**교제폭력은 법률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현재 교제폭력만을 특별히 다루는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교제폭력의 개별 행위가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인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할 수 있다.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 교제폭력의 행위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행위 유형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뿐이다.

### 바로잡기



**2차 피해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법률에 규정된  
개념은 아니다?**

2018년 12월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따라서 2차 피해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이 더 이상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법률적 개념이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는 경우에 따라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예 :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된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학대나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역시 “가정폭력”의 개념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바, 가정폭력이 물리적, 신체적 폭력만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이다.

## 02 / 잘못된 표현 및 용어 바로잡기

잘못된 표현 및 용어 예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올바른 표현 및 용어 예시
OO녀, OO女, 여OO, OO남, OO男, 남OO	사건의 본질보다는 피해자의 신상에 집중하게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형성함.	X (사용 자제)
꽃뱀	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무고죄의 가해자는 여성, 피해자는 남성으로 고정된 것이 아님에도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성혐오적 표현에 해당함.	X (사용 자제)
검은 손, 나쁜 입, 몹쓸 짓	가해행위를 축소하는 표현으로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희석시켜 범죄행위를 가볍게 여기게 함.	X (사용 자제)
몰카, 몰래카메라	장난스러운 이미지를 덧씌우며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희석시킴.	불법 촬영
음란물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상업용 음란물로 여겨지게 함.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
딥페이크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진이나 영상 합성기술을 의미하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함.	불법 합성물
리벤지 포르노	상업용 음란영상물의 일종으로 오해를 유발하고 특히, 불법촬영 및 유통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음.	불법 촬영물 불법 유포물
짐승, 늑대, 악마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게 함.	X (사용 자제)

잘못된 표현 및 용어 예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올바른 표현 및 용어 예시
발바리, 발정난 개	가해자 개인의 '변태적 성욕' 내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특성'을 부각하는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이나 범죄의 흉악성을 무시하고 범죄를 희화화하는 표현임.	X (사용 자제)
성관계, 성추문	범죄라는 점을 희석시키고, 성관계와 성폭력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	X (사용 자제)
성폭행	물리적 폭행이 수반되는 성폭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의미가 불분명함.	성폭력 강간, 준강간 등
더듬는	피해자 입장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라는 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음.	X (사용 자제)
더러운 욕망	절제·억제하지 못한 성욕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식의 기존 통념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음.	X (사용 자제)
사랑싸움	성희롱, 성폭력, 스톱킹 등을 단순히 '사랑싸움' 정도로 표현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사소화하고, 폭력 피해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절한 표현임.	X (사용 자제)

# 03 개념 이해

## 01 성희롱과 성폭력

### ■ 성희롱과 성폭력의 구별은?

- ▶ 성희롱·성폭력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과 취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 ▶ 성희롱은 근로환경에서 여성들의 노동권 및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하여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행위이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등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성과 무관하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 사람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게 된다.
- ▶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국가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 내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성희롱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어느 하나의 행위가 “형법” 등이 정한 성폭력 범죄 성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

회사에서 제과·제빵 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본점 지하 공장에서 부하 직원 A씨에게 “사랑한다. 우리 애인하자”, “너는 보보를 해도 성적 느낌이 없냐?”며 A씨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하였으며, 퇴근길에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A씨에게 데려다주겠다며 역지로 차에 태웠다가 A씨가 잠든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간 후 “너무 피곤하니 잠시 쉬었다 가자”라며 객실로 유인, 강제로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함.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면서 성폭력 범죄에도 해당함.

남자 사장이 속옷 차림으로 자기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 A씨에게 업무교육을 한 뒤, 게임을 하다 벌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종아리를 주무르자 “더 위로, 더 위로, 다리 말고 다른 곳을 주물러라”라고 시킴. A씨는 허리를 숙이고 양쪽 다리를 주물렀는데, 속옷 안 성기까지 보였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

대학 신입생 A씨는 카톡 단체방에서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음담패설을 하였고 특정 여학생을 놓고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기도 하였음(학교 측은 가담 정도가 심한 4명에게 무기정학을 결정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유형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하지는 않으나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대학은 자치규범에 따라 이러한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음.

회사에서 과장이 수시로 20대 중반 미혼의 신입사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음란한 말을 하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몸짓을 하는 등 성희롱적 언동을 해왔고 이에 신입사원은 거부감을 표시해 왔음에도 과장은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비비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이라고 소리를 내는 행동을 함. 이에 대해 법원은 과장에 대해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함.



법률상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그러므로 이 사례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면서 성폭력 범죄에도 해당함.

## ■ 성희롱과 성폭력의 유형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유형

#### 가. 육체적 행위

-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2)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나. 언어적 행위

-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3)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5)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다. 시각적 행위

-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 직장 내 성희롱도 피해 정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주요 성폭력 범죄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교섭(성기 삽입)을 하는 행동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성교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비자발적 성적 접촉)하는 것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 **미성년자 의제강간**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불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행위를 하였더라도 처벌됨. 단,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폭행, 협박 불요)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등을 하는 것

##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주요 법률

성희롱 관련	성폭력 범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기본법</li> <li>• 국가인권위원회법</li> <l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법</li> <l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li> <l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li> <li>•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li> </ul>

## 02 디지털 성폭력

### ■ 디지털 성폭력의 의미

- ▶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이미지·영상의 제작·유통 등을 통해 현실의 물리적 접촉 없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특징

- ▶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의 복제 가능성이 크며, 유포 험박·유포에 대한 두려움이 수반되는 점,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를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 유형

유 형		
촬영물 관련 성폭력	불법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 일부, 성관계 장면 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li> <li>•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li> </ul>
	유포·재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 촬영물을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li> <li>• 타인에게 제공, 공유</li> <li>•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li> </ul>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 촬영물을 타인이나 온라인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li> <li>• 촬영물을 이용하여 성행위, 추가 촬영 등 강요</li> </ul>
	합성 제작·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li> <li>• 사진 또는 동영상을 편집·합성·가공(딥페이크 등)</li> </ul>
	소지·구입·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촬영·유포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li> </ul>
기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그루밍(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또는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li> <li>•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성적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li> <li>• 성적 괴롭힘(상대방을 성적으로 명예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행위 등)</li> <li>• 온라인 스토킹(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상대방의 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li> </ul>	



### 관련 주요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죄), 제324조(강요)

## 03 스토킹

### ■ 스토킹의 의미

-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스토킹을 범죄로 다루지 않다가,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보아 형사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은 대부분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며, 행위 유형이 다양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 ▶ 20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스토킹행위로 포섭되지 않던 온라인 스토킹행위 유형 등을 포함하여, 금지되는 스토킹행위 유형을 총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스토킹행위’이다. 단순 일회성 ‘스토킹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는 않으나,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며, 기본적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방식으로 형사 합의를 강요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또 다른 강력범죄의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3년 7월 법률 개정을 통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여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 법률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에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 ■ 스토킹의 특징

- ▶ 스토킹은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과 긴밀한 관련이 있고 대부분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1)</sup>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관한 통계를 보면, 전 연인, 전 배우자 등 친밀했던 관계에 있었던 경우가 많으며, 전혀 모르는 관계에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는 불안감, 공포, 두려움 등의 심리적 피해, 일상생활의 어려움, 중단 등의 사회적 피해, 상해나 질병 등의 신체적 피해 등 피해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sup>2)</sup> 또한, 스토킹은 생명·신체의 침해와 같은 극단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확률이 높은 행위인 만큼 스토킹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직 내에서도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1) 김정혜·박보람 정다운,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2) 여성가족부(사)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2018. 9)

가져야 하며, 언론보도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에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sup>3)</sup>

- ▶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스토킹을 범죄로 보고 형사처벌한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기에 스토킹 및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다. 스토킹을 적극적 구애 또는 낭만적 사랑의 과정이라고 잘못 이해하거나,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스토킹에 대한 대표적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 관련 주요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3) 여성가족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자료(2023)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예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톱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대법원 판결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유형의 스톱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 12037 판결)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톱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톱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톱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 6411 판결)

## 04 교제폭력

### ■ 교제폭력의 의미

- ▶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나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했던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주로 의미한다. 단순히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나 눈에 보이는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포괄한다.
- ▶ 기존에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범죄의 중대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관계의 중립적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제 폭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 ■ 교제폭력의 특징

- ▶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했던 관계에 있었던 경우 발생하기 쉬우며, 대체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교제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를 통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애정 관계나 친밀한 관계를 명분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교제폭력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치부될 경우 피해자들은 더 큰 피해에 노출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 ▶ 이와 같은 교제폭력 사건은 최근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폭력의 개별 행위가 어떤 내용의 범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을 위한 적용 법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폭행을 행사했다며 폭행죄, 협박을 하였다면 협박죄 등으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개별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관련 주요 법률

- 형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05 가정폭력

### ■ 가정폭력의 의미

- ▶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통제, 정신적 학대,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포괄적 의미의 폭력을 의미한다.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sup>4)</sup>

### ■ 가정폭력의 특징

- ▶ 가정폭력은 다른 일반 폭력행위와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정폭력은 대체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외부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은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에 희생되며, 사회적으로 묵인되고 은폐되기 쉽다.
- ▶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폭력행위가 반복·지속되고, 폭력의 정도가

4) ‘적모서자(嫡母庶子)관계’란 남편이 처 아닌 다른 여자로부터 낳은 자식과 처와의 관계, 즉 아내와 남편의 혼외자 관계를 의미한다.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는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정폭력은 사회적·경제적 의존 관계에 있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가정구성원이라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복의 두려움 역시 클 수밖에 없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만 볼 수는 없으므로 형사법으로만 접근하여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 ■ 가정폭력의 유형<sup>5)</sup>

유형	
강제, 위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기</li> <li>•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li> </ul>
부인, 비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언, 멸시하기</li> <li>•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li> </ul>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기</li> <li>• 모든 결정을 혼자 하기 등</li> </ul>
가정 내 성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의심하기</li> <li>• 낙태 강요</li> <li>• 신체 부위 등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기 등</li> </ul>
경제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낭비, 채무, 지출을 의심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하기</li> <li>• 지속적으로 돈 요구하기</li> <li>•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li> </ul>
정서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있는 장소 미행하기</li> <li>•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li> <li>• 만나는 사람 또는 행동 통제하기</li> <li>• 고립시키기, 공포감 조성하기, 조롱하기 등</li> </ul>

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 유형”

[https://www.stop.or.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64&srch\\_menu\\_nix=QluR8Qcp&srch\\_mu\\_site=CDIDX00005](https://www.stop.or.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64&srch_menu_nix=QluR8Qcp&srch_mu_site=CDIDX00005)

유형	
자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li> <li>•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기 등</li> </ul>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하기</li> <li>• 물건을 부수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하기</li> <li>• 무기 전시, 피해자 주변인에 대해 위협하기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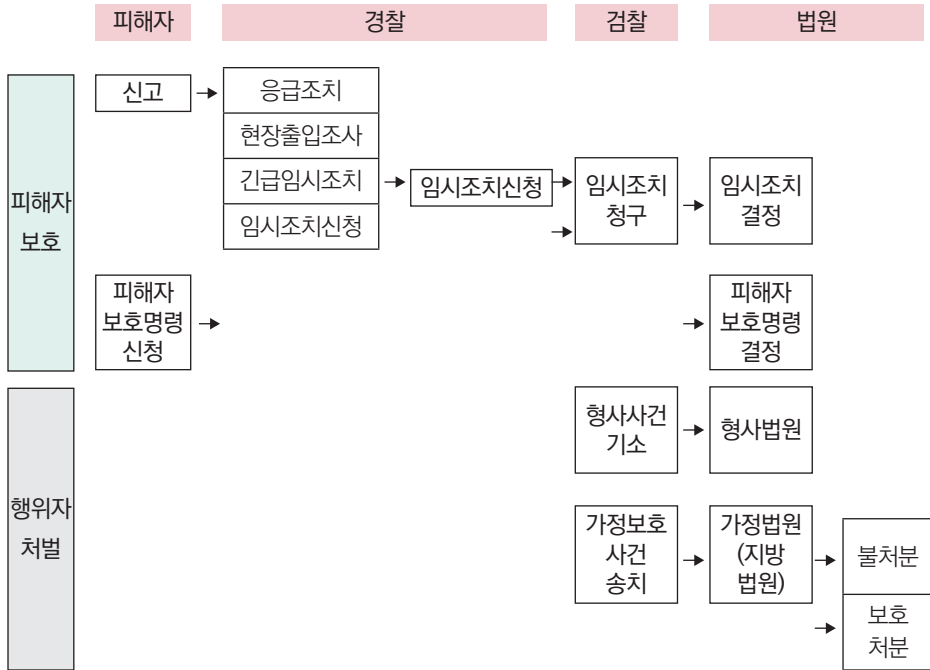
## ■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의 이원화

- ▶ 가정폭력의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정폭력행위를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여야 한다.<sup>6)</sup> 가정폭력사건은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보호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상의 일반적 형사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즉,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처리는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하며, 형사사건은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형사법원의 관할이다.
- ▶ 가정폭력사건의 세부 처리절차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① 가정폭력사건 발생 → ② 경찰에 신고 → ③ 경찰의 현장 출동 → ④ 경찰의 응급조치(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 ⑤ 검찰에 송치(동법 제7조) → ⑥ 검찰이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동법 제8조)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동법 제9조) 혹은 형사사건으로 기소 → ⑦ 법원의 조사·심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동법 제29조) → ⑧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송치한 법원에 이송(동법 제37조제2항) 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한 보호처분(동법 제40조제1항)의 결정 등으로 진행된다.

6)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



###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sup>7)</sup>



#### 관련 주요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법

7) 박희수, 『가정폭력 범죄의 처리절차 개선방안 : 피해자보호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18), 10면

## 06 2차 피해

### ■ 2차 피해의 의미

- ▶ ‘2차 피해’는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 사용자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부당한 인사 조치 등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등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 ▶ 2차 피해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피해자임을 이유로 또는 신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으로, 피해 사실 발생은 은폐, 방치, 축소하거나, 처리를 지체하고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피해자의 언동을 성희롱·성폭력 등 통념에 기반하여 의심하거나 비난, 따돌리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이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피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및 인사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 ▶ 2차 피해는 오랫동안 법률에 정의되지 못하다가 2018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구체적 정의 규정이 만들어졌다. 또한, 위 법률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로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2차 피해의 개별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 ■ 따옴표(“ ”) 저널리즘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 ‘따옴표 저널리즘’이란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전달하고자 하는 미디어의 속성에 따라,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분석·해석을 하지 않고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따옴표로 인용하여 그대로 보도하는 관행을 말한다.
- ▶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 피해자의 피해 진술, 피해자를 조롱·비난하는

일부 누리꾼의 의견, 유튜브 등 다른 매체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여과 없이 직접 인용하여 전달하는 방식은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관련 주요 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정의), 제14조(피해자의 권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 관련 대법원 판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두74702 판결 참조).

## 07 잘못된 법률상식

잘못된 법률상식	잘못된 이유
<p>무혐의 처분, 무죄판결을 받으면 피해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된 것이다?</p>	<p>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은 수사기관의 수사 후 검사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내려지는 처분이고, 무죄판결은 기소 이후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하는 것으로 이 또한 검찰의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나 관련 증거의 부족 등으로 죄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그러므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라고 해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없었거나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음.</p>
<p>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고소인이 고소취하(고소취소)를 하면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는다?</p>	<p>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 고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이나 고소취하가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p>
<p>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이다?</p>	<p>형법 등 개정(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조항은 삭제되어, 현재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p>
<p>피고, 피의자, 피고인은 다 같은 말이다?</p>	<p>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 제기를 당한 사람, 피의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수사대상인 사람, 피고인은 기소 후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함.</p>
<p>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여전히 처벌이 불가능하다?</p>	<p>현행법상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2021년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등을 “성착취 목적 대화죄”로 보아 형사처벌하고 있음.</p>

잘못된 법률상식	잘못된 이유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됨.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다면 나중에 유포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촬영 당시 촬영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유포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함.
온라인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등의 스톱킹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20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상대방의 이름, 사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톱킹행위로 보고 있으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할 경우 이를 스톱킹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음.
스토킹행위자(가해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톱킹행위자에 대하여 스톱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 또는 가족 등으로 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내용으로 스톱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도 긴급응급 조치의 권한이 있음.
교제폭력을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교제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교제폭력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나, 폭력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별 범죄(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로 처벌이 가능함.

잘못된 법률상식	잘못된 이유
가정폭력처벌법은 오직 가정구성원에 대한 물리적 폭력만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하고 있지 않음.
사실혼관계에 있거나 이혼한 전배우자와의 사이에는 가정폭력이 성립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은 법률혼 배우자 이외에 사실혼 배우자, 전 배우자도 포함되며,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양부모, 배우자의 혼인 외 자녀 등도 포함됨. 따라서 사실혼배우자 또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보호재판을 받거나 일반 형사 절차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규정은 가정폭력에도 적용된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고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가정폭력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음.
2차 피해를 가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경우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가능한 범죄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가능함.

### 〈참고〉 무고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든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보도 체크리스트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보도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b>1. 취재 시 점검사항</b>		
1)	인터뷰 전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취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2)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 신원 노출을 방지하는 방식의 취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3)	사건 보도 시 예상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보도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4)	피해자가 인적 사항을 노출하는 방식의 인터뷰를 희망한다고 할 경우, 보도 시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히 알렸는가?	<input type="checkbox"/>
5)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상태를 고려하면서 취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6)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도되는지 충분히 알렸는가?	<input type="checkbox"/>
7)	이후 보도에 삽화, 자료 화면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8)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사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질문, 오직 호기심에만 기반한 질문은 지양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9)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나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질문은 지양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10)	보도 방식에 삽화, 자료 화면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항목		체크
11)	전화 또는 대면 시 피해자가 인터뷰인지 모르고 말하거나 답변한 내용을 보도에 활용할 경우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12)	피해자의 사적 공간(거주지, 직장 등)에 침입하거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재 정보 및 자료를 입수하지는 않았는가?	<input type="checkbox"/>
13)	사건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기록물(SNS, 일기, 유서, 편지 등)을 촬영하지 않았는가?	<input type="checkbox"/>
<b>2. 기사 작성 및 편집 제작, 보도 시 점검사항</b>		
1)	당사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볼 때 보도할 가치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2)	보도 방식이 피해자 보호에 적합한가? - 실명·얼굴 공개를 종용하지 않았는가? - 실명·얼굴 공개 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했는가? - 생방송 인터뷰 전 피해자의 의도가 잘 전달되고 방송에 적합한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점검했는가?	<input type="checkbox"/>
3)	피해자의 신원 노출 가능성 있는 직·간접정보(연령대, 직업, 지역, 관계 등)가 포함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부각하고 있지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4)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피해자의 사생활(SNS, 습관, 기호, 질병 등) 정보 및 피해자의 동의 없는 사진, 영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5)	피해사실을 지나치게 자세히 또는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6)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 사건' 등 피해자를 주체로 한 사건명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7)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이나 내용은 없는가? -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나약할 것이라는 편견(구석에 웅크린 자세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표현한 삽화 등) -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사건과 결부해 피해 주장을 의심	<input type="checkbox"/>

	항목	체크
8)	피해자(직업, 행동, 성향, 결혼 여부, 옷차림, 거주지 등)나 피해자 측(가정환경 등)에게 문제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9)	범행수법 및 수사기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10)	가해자의 책임과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표현(몹쓸 짓, 나쁜 손, 몰카, 성추문 등) 또는 부적절한 삽화 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11)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가해자의 사생활(학력, 경력, 평판, 대인관계 등) 보도에 집중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12)	성폭력·성희롱·스토킹 등 원인을 가해자의 정신질환이나 성욕, 여성과의 접촉 등으로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13)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가해자 일방의 주장을 대변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자극하고 있지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14)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에 대해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15)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법률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16)	<p>성폭력·성희롱·스토킹 등 사건 및 당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잘못된 통념 및 인식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피해자 간의 연애 및 성적인 관계로 다루는 것</li> <li>-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및 변태적 성향, 절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을 지나치게 강조</li> <li>- 피해사실 폭로 후 부정적 변화가 피해자 탓, 미투운동 탓이라는 인식</li> <li>- 차별적 표현, 비하 표현, 선정적 표현 사용</li> </ul>	<input type="checkbox"/>
17)	성폭력·성희롱·스토킹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직문화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부 록



- 01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02.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03.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04.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관련사항 발취)
0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관련사항 발취)

# 01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 ■ 전문

- ▶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 ▶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 ▶ 언론은 일상적 보도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 총강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한다.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
4. 언론은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7.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언론은 생명권 보장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살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9. 언론은 인권교육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10.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 ■ 주요 분야별 요강

###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

1.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가. 권위적인 용어와 국민을 낮춰보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 나. 사회 각 부문의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다.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 나. 노사 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 다.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화하지 않도록 한다.
  - 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취재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라. 사망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마. 자살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살을 미화·합리화하거나 실행방법을 묘사하지 않는다.
  - 바. 인용이나 인터뷰를 이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 마.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의 상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 공개하지 않는다.
  - 바.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는다.
  - 사.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제4장 성 평등

- 1.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 나. 가부장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라.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 나.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보도를 자제한다.
  -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해 웃음거리로 묘사하지 않는다.

## 제6장 노인 인권

1.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가.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지 않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한다.

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도한다.

나. 노인 인권 침해, 특히 시설 생활 노인 등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다. 노인의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 제7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1.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나.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73

## 제9장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

1.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동의가 없는 한 성명, 출신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북한이탈주민을 항상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이고 자립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다. 사회 부적응 등 부정적 사례를 보도할 경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2. 언론은 통일이러는 장기적이고 성숙한 관점으로 북한 주민을 바라본다.

가. 북한 주민의 경제 상황이나 외부와 고립되어 형성된 독특한 문화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지 않는다.

---

나. 북한의 도발이나 긴장 유발 시 북한의 잘못은 지적하되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는다.

다. 안전이 보장될 때에만 식별이 가능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한다.

2011년 9월 23일 제정 / 2014년 12월 16일 개정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 02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 ■ 전문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예방과 사회정책적 대책 마련 등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본연의 임무이다. 그러나 범죄 보도는 필연적으로 특정인의 인격권, 무죄추정원칙,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하며 다양한 인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성폭력 범죄(이하 성범죄) 보도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2011. 9. 23.)의 세부 기준으로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언론인들이 준수해 줄 것을 권고한다.

### ■ 총강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와 함께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범죄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가 가부장적 사회구조, 남성 중심적 성문화와 그릇된 성인식 등으로 인해 사적 영역의 문제로 여겨져 은폐되거나 본질이 왜곡되어 왔다. 언론은 이런 맥락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시각과 태도로 성범죄 보도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언론은 성범죄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언론은 성범죄의 원인으로 개인의 정신질환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의 문제만 부각하지 말고 그 근본 원인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3. 언론은 성범죄를 사회적 성역할에 관한 잘못된 통념에 기초해 피해자의 도덕 관념과 처신의 문제로 인해 빚어진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언론은 사회적 안전망 부재, 범죄 예방 체제 미비 등 성범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5.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와 그 가족의 경우에도 그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지나친 공포감이나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 감정만 조성해 처벌 일반도의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언론은 성범죄 보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 가해자 가족 등이 겪는 극심한 혼란과 인권문제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성폭력 사건이 아닐 경우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실천요강

1. 언론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는다.
3. 언론은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이나 피해자와 시민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고 불필요한 성적인 상상을 유발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상관없는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현장 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5. 언론은 성범죄의 범행 동기를 개별적 성향-가해자의 포르노, 술, 약물 등 탐닉, 자제할 수 없는 성욕 등-에 집중함으로써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언론은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관련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7. 언론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기 책임 하에 보도한다.
8. 언론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9.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
10. 언론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법률적 정보 등의 제공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항을 적극 보도한다.

2012년 12월 12일 제정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 ■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민족화합·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와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회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공정정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품위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올바른 정보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인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 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본 실천요강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규정하며, 강령 및 본 실천요강의 규정을 회원들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기구로 협회 내에 韓國記者協會 倫理委員會(記協 倫理委)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 1. 언론자유

- 1) 회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
- 2) 회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협회 보도자유분과위원회에 침해사례를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 3) 회원은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 2. 취재 및 보도

- 1) 회원은 기자의 제1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회원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3) 회원은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 4) 회원은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 5) 회원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偽計) 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 6) 회원은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7) 회원은 고의든 고의가 아닌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 8) 회원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9) 회원은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 10) 회원은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보도한다.
- 11) 회원은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 3. 품위유지

- 1) 회원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한다.
- 2) 회원은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 3) 회원은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 4) 회원은 출입처 기자단의 단순한 보도편의만을 위한 [엠바고]와 불합리한 담합을 삼간다.
- 5) 회원은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 6) 회원은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1994년 3월 29일 제정

2006년 5월 15일 개정

한국기자협회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관련사항 발췌)

###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헌법 제17조,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
-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

### 제2조(명예훼손 금지)

- ①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제2항).
- ② 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307조 제1항).
- ③ 언론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308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제27조 제4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②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③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7조제4항).

#### 제4조(성폭력 피해자 보호)

① 언론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② 언론은 성폭력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이나 성희롱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아동·청소년의 보호)

① 언론은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소년법 제68조)

② 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주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③ 언론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제6조의2(아동학대사건 보도)

①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 학대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초상, 성명, 주소, 나이, 직업,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② 언론은 아동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을 자세히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가정폭력사건 보도 등)

- ① 언론은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표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 ② 언론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사소송법」 제10조).

###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3.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금지된 사항
-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적인 관심 사항인 경우 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보도 윤리)

- ①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의2(차별 금지)

-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범죄 묘사)

-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언론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성관련 보도)

- ①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2.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③ 언론은 간통, 원조교제 등 부도덕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합리화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폭력 묘사 등)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재판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981년 11월 30일 제정

2021년 11월 24일 개정

2022년 6월 29일 개정

언론중재위원회

## Q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관련사항 발췌)

###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생활 보호)

-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방송은 기존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0조(명예훼손 금지)

-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1조(인권 보호)

- ①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 ④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의2(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 ① 방송은 범죄사건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발인, 참고인, 증인 및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의 인적사항 및 단체의 명칭·주소를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방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 제21조의3(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 ①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가해자(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가해자’라 한다)의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의4(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등)

- ① 방송은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에는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22조(공개금지)

- ①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가해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당사자(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 ①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囚衣)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생명의 존중)

- ①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불가피하게 인신매매, 유괴, 성매매,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내용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외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3. 혐오감·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또는 과도한 부각,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신체 촬영, 성적 언행 등에 대한 표현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 제30조(양성평등)

-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성표현)

- ①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2. 성도착·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3. 유이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윤간·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5.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 제36조(폭력묘사)

- ① 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스포츠·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삭제 <2014. 1. 9.>
- ④ 방송은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2(가학적·피학적 묘사)**

방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삭제
3.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범죄 또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7.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 ①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살인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마약류의 사용 및 이로 인한 환각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재연·연출)**

- ①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때에는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기법(모자이크·음성변조·인터뷰 형식 등을 통해 실제상황인 것처럼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경우에는 시청자가 이를 실제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허구의 소재를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할 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제 존재했던 사건·사고가 아님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하거나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할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피해자·가해자 또는 당사자 등의 배역에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2008년 6월 24일 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9호  
2020년 12월 28일 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0호



##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성명 가나다순)

### 2022년 수첩 집필

김보영 노무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양정은 변호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소라 노무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자연 노무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년 수첩 집필

강소영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수연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시정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 자문명단

강 희 경영전략실장	경인일보
구자준 기자	채널A
송란희 공동대표	여성의 전화
신혜원 기자	jtbc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 뉴스
허찬행 상임이사	언론인권센터

